의안번호 2696

2021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(노인복지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

검 토 보 고 서

Ⅰ. 제안경위

○ 의안번호 제2696호, **2021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(노인복지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**은 2021년 8월 1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

Ⅱ.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

1. 제안이유

- 가.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으로 사회복지기금(노인복지계 정) 2021년 수입·지출계획이 변경됨
- 나. 이에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(노인복지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, 수입계획상「예치금 회수」금액이 당초 246 백만원에서 905백만원으로 659백만원 증가하였고. 나. 이에 따라 지출계획상 재무활동「예치금」금액이 당초 40백만원에서 699백만원으로 659백만원 증가하였음

다. 수입·지출계획 변경내용

<수입계획>

<지출계획>

(단위 : 백만원)

(단위	:	백만원)
-----	---	------

구 분	당초 (A)	변 경 (B)	증 감 (B-A)
계	1,321	1,980	659
예탁금회수	510	510	-
예치금회수	246	905	659
이 자 수 입	295	295	-
기 타 수 입	269	269	-

			-
구 분	당 ^초 (A)	변경 (B)	증 감 (B-A)
계	1,321	1,980	659
비용자사업	1,177	1,177	-
융 자 성 사 업	100	100	-
기 본 경 비	3	3	-
예 치 금	40	699	659

Ⅲ. 검토의견

-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0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여유자금 6억 5,900만원을 수입계획중 예치금회수(6억 5,900만원)으로 반영하고, 수입 계획과 연동된 지출계획중 여유자금 예치(6억 5,900만원)에 지출계획 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
- ○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1)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 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 록 정하고 있음
 - 아울러「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²⁾에는 전년도 기금결산에 따라 수입계획중 예치금회수 금액이 변동되어 지출계획중 예 치금 항목만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도 재무활동의 20%를 초과하는 변경에 해당되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
 -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출계획중 정책사업인 **일반예산(재무활동)**이 당초보다 1,636.5%, 6억 5,900만원 증액요청된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로부터 의결이 필요한 사항임

^{1) 「}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의 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(이하 생략)

²⁾ 행정안전부, 「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('20. 7), p.43, p.302

〈표 3-1〉 사회복지기금(노인복지계정) 지출계획(안)

(단위: 백만원 %)

				(_ / /	· ¬ □ □, /0/
;	정 책 사 업 / 단 위 사 업 / 세 부 사 업	당 초 (A)	기 금 운 용 계획변경안 (B)	증 감 (C=B-A)	증 감 률 (D=C/A)
	계	1,320	1,980	659	-
	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	1,277	1,277	1,277	-
	일 반 예 산 (재 무 활 동)	40	699	659	1,636.5
	보 전 지 출	40	699	659	1,636.5
	여 유 자 금 예 치	40	699	659	1,636.5
	행 정 운 영 경 비	3	3	3	-

※ 백만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 것임

자료근거: 서울특별시, 어르신복지과-15576 ('21. 8. 24) 재구성

- 아울러 동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, '20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여유자금을 예치금으로 지출하여 기존에 운용중인 사회복지기금(장애인복지 계정)의 조성액의 규모를 확대하려는 것으로
 - 동 계정의 설치근거인 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」에 명시된 기금 의 용도³⁾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과 같이 예치후 필요시 지출계획을 변경하여 운용하는 것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

^{3) 「}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」제5조(노인복지계정)

② 노인복지계정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

^{1.}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

^{2.} 노인단체 지도·육성 및 건전한 시민운동 지원

^{3.} 노인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

^{4.} 노인 관련 학술대회 등 행사 지원

^{5.} 노인 관련 단체 및 시설종사자 교육

^{6.} 저소득노인의 자활 지원

^{7.} 노인복지계정의 자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

^{8.}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